

아주기업경영연구소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22. 05. 25 제정



아주기업경영연구소

AJU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Management

## 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 1.1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                               |   |
|-------------------------------|---|
| 1.1.1 (의결권 행사 방향의 기본 원칙)..... | 6 |
| 1.1.2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 6 |
| 1.1.3 (주주총회 일시·장소의 변경).....   | 6 |
| 1.1.4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   | 6 |
| 1.1.5 (의결주체의 변경).....         | 6 |
| 1.1.6 (주주제안).....             | 6 |
| 1.1.7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 6 |

## 1.2 회사·사업목적·회계연도 변경

|                           |   |
|---------------------------|---|
| 1.2.1 (회사명 변경) .....      | 7 |
| 1.2.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 | 7 |
| 1.2.3 (회계연도 변경) .....     | 7 |

## 1.3 안건 상정

|                        |   |
|------------------------|---|
| 1.3.1 (일괄 상정 안건) ..... | 7 |
|------------------------|---|

## 1.4 의결권 행사

|                             |   |
|-----------------------------|---|
| 1.4.1 (정족수 변경) .....        | 7 |
| 1.4.2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 | 7 |
| 1.4.3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   | 7 |

## II. 재무제표 및 배당

## 2.1 재무제표

|                        |   |
|------------------------|---|
| 2.1.1 (재무제표의 승인) ..... | 8 |
|------------------------|---|

## 2.2 배당

|                                |   |
|--------------------------------|---|
| 2.2.1 (배당금 지급) .....           | 8 |
| 2.2.2 (중간·분기 배당) .....         | 8 |
| 2.2.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 | 8 |
| 2.2.4 (현물배당) .....             | 8 |

## 2.3 외부감사

|                          |   |
|--------------------------|---|
| 2.3.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 8 |
|--------------------------|---|

## Ⅲ.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

## 3.1 이사회

|                              |   |
|------------------------------|---|
| 3.1.1 (이사회 규모 변경) .....      | 9 |
| 3.1.2 (이사회외 사외이사 비중) .....   | 9 |
| 3.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9 |
| 3.1.4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 9 |
| 3.1.5 (선임사외이사 도입).....       | 9 |
| 3.1.6 (이사회 소집 기한 변경).....    | 9 |

## 3.2 이사회 내 위원회

|                            |    |
|----------------------------|----|
| 3.2.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 9  |
| 3.2.2 (이사회 내 위원회 폐지).....  | 9  |
| 3.2.3 (위원회규정 마련 및 공시)..... | 10 |

## 3.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 3.3.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 10 |
|--------------------------------|----|

## 3.4 보수위원회

|                          |    |
|--------------------------|----|
| 3.4.1 (보수위원회 위원 구성)..... | 10 |
|--------------------------|----|

## 3.5 내부거래위원회

|                                |    |
|--------------------------------|----|
| 3.5.1 (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위원회 설치)..... | 10 |
|--------------------------------|----|

## 3.6 감사위원회

|                                    |    |
|------------------------------------|----|
| 3.6.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 10 |
| 3.6.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 10 |

## Ⅳ. 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 4.1 사내이사

|                            |    |
|----------------------------|----|
| 4.1.1 (사내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 11 |
|----------------------------|----|

## 4.2 사외이사

|                           |    |
|---------------------------|----|
| 4.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 11 |
| 4.2.2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 | 11 |
| 4.2.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 11 |

|                   |                                  |    |
|-------------------|----------------------------------|----|
| 4.3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    |
| 4.3.1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12 |
| 4.3.2             |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12 |
| 4.4               | 집행임원                             |    |
| 4.4.1             | (집행임원제도 도입).....                 | 12 |
| 4.5               | 이사 선임                            |    |
| 4.5.1             | (다수의 이사후보에 대한 일괄 선임 투표).....     | 12 |
| 4.5.2             | (집중투표제).....                     | 12 |
| 4.5.3             | (사내이사 후보의 경합시 선택기준).....         | 12 |
| 4.5.4             | (사외이사 후보의 경합시 선택기준).....         | 13 |
| 4.6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연임 제한    |    |
| 4.6.1             | (이사의 해임요건).....                  | 13 |
| 4.6.2             | (이사의 연임 제한).....                 | 13 |
| 4.6.3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 13 |
| V. 임원의 보수 및 성과 보상 |                                  |    |
| 5.1               | 이사·감사의 보수                        |    |
| 5.1.1             | (이사의 보수 한도).....                 | 13 |
| 5.1.2             | (이사 보수에 관한 공시 확대).....           | 13 |
| 5.1.3             |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 13 |
| 5.1.4             |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 14 |
| 5.1.5             | (감사의 보수 한도).....                 | 14 |
| 5.2               | 성과 보상                            |    |
| 5.2.1             | (성과 보상의 지급 기준).....              | 14 |
| 5.2.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4 |
| 5.2.3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          | 14 |
| 5.2.4             |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 14 |
| 5.2.5             |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 15 |
| 5.2.6             |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5 |

|                                       |    |
|---------------------------------------|----|
| 5.3 퇴직보상                              |    |
| 5.3.1 (퇴직보상금).....                    | 15 |
| 5.3.2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 15 |
| 5.3.3 (황금낙하산 등 과도한 퇴직금 규정).....       | 15 |
| 5.3.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15 |
| <br>VI. 자본                            |    |
| 6.1 자본 증가                             |    |
| 6.1.1 (자본 증가).....                    | 15 |
| 6.1.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16 |
| 6.1.3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 16 |
| 6.1.4 (채무재조정 목적의 신주 발행).....          | 16 |
| 6.2 종류주식                              |    |
| 6.2.1 (종류주식 발행).....                  | 16 |
| 6.2.2 (경영권 방어목적의 종류주식 발행).....        | 16 |
| 6.3 자기주식                              |    |
| 6.3.1 (자기주식의 취득).....                 | 16 |
| 6.3.2 (자기주식의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 16 |
| 6.4 사채                                |    |
| 6.4.1 (주식연계채권 등 특수사채 발행).....         | 17 |
| 6.4.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 17 |
| 6.5 주식분할 · 병합                         |    |
| 6.5.1 (비례적 주식분할 · 병합).....            | 17 |
| 6.5.2 (비례적이지 않은 주식병합).....            | 17 |
| 6.6 자본금 감소                            |    |
| 6.6.1 (자본금의 감소).....                  | 18 |

|                                   |    |
|-----------------------------------|----|
| VII. 인수합병 및 기업구조 조정               |    |
| 7.1 인수합병                          |    |
| 7.1.1 (인수합병).....                 | 18 |
| 7.2 분할 및 분할합병                     |    |
| 7.2.1 (분할 및 분할합병).....            | 18 |
| 7.3 상장폐지                          |    |
| 7.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 19 |
| 7.3.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 19 |
| 7.4 경영권 방어장치                      |    |
| 7.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 19 |
| VIII. 지속가능경영                      |    |
| 8.1 ESG 경영                        |    |
| 8.1.1 (ESG지속가능경영).....            | 19 |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 1.1.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 1.1.1 (의결권 행사 방향의 기본원칙) 주주 일반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1.1.2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 등 변경 취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 찬성한다.
- 1.1.3 (주주총회 일시·장소의 변경)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 등 변경 취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 찬성한다.
- 1.1.4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 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한다.
- 1.1.5 (의결주체의 변경) 기존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1.1.6 (주주제안)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주주 권리 등 주주가치에 끼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 1.1.7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후보의 적격성, 회사의 지배구조, 노사관계,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1.2 회사명 · 사업목적 · 회계연도 변경

- 1.2.1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도와 영향 등 주주 가치 훼손이 합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 한 찬성한다.
- 1.2.2 (사업목적의 추가 · 변경)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 변경 안에 대해 구체적 시행계획이 없어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등 주주가치나 공정거래 질서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
- 1.2.3 (회계연도 변경) 회계연도를 변경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찬성한다.

### 1.3 안건 상정

- 1.3.1 (일괄 상정 안건) 일괄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1.4 의결권 행사

- 1.4.1 (정족수 변경)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
- 1.4.2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자의 자격을 주주 및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 1.4.3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주주가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주주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방식만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Ⅱ. 재무제표 및 배당

### 2.1 재무제표

2.1.1 (재무제표의 승인)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승인 안에 대해 반대한다.

### 2.2 배당

2.2.1 (배당금 지급)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수준이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2.2.2 (중간·분기 배당)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2.2.4 (현물배당)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 현물로 배당되는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2.3 외부감사

2.3.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해당회사 등이 외부 감사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 이외에 다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Ⅲ.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

#### 3.1 이사회

- 3.1.1 (이사회 규모 변경) 경영의사결정의 합리성 ·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사의 수를 줄이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저하될 정도로 이사의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3.1.2 (이사회 사외이사 비중) 이사회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사유의 합리성과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 3.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찬성한다.
- 3.1.4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1.5 (선임사외이사 도입)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1.6 (이사회 소집 기한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지기한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3.2 이사회 내 위원회

- 3.2.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한다.
- 3.2.2 (이사회 내 위원회 폐지)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3.2.3 (위원회규정 마련 및 공시)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 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3.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4 보수위원회

3.4.1 (보수위원회 위원 구성)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과반수의 사외이사가 포함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5 내부거래위원회

3.5.1 (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위원회 설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과반수의 사외이사가 포함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3.6 감사위원회

3.6.1 (설치 의무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대한다.

3.6.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IV. 이사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 4.1 사내이사

4.1.1 (사내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주총회 승인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분식회계, 기타 주요경영공시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기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 4.2 사외이사

4.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관계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임 또는 타 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 중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해가 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거나,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2.2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 사외이사 후보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성한다.

4.2.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4.3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4.3.1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의 선임에 반대한다.

-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다른 경영 컨설팅 비용 등 과도한 비감사 용역보수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 중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3.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 4.4 집행임원

4.4.1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4.5 이사 선임

4.5.1 (다수의 이사후보에 대한 일괄 선임 투표) 다수의 이사후보를 묶어 일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이사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4.5.2 (집중투표제) 정관에 집중투표제 조항을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4.5.3 (사내이사 후보의 경합시 선택기준) 다수의 사내이사 후보가 경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찬성한다. 다만, 보다 적합한 후보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4.5.4 (사외이사 후보의 경합시 선택기준) 다수의 사외이사 후보가 경합할 경우 기본적으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경영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에 찬성한다. 다만, 보다 적합한 후보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 4.6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연임 제한

4.6.1 (이사의 해임요건) 특별결의 요건 등 상법상 이사해임요건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한 임원퇴직금 규정을 삽입하는 정관 변경 안에 대해 반대한다.

4.6.2 (이사의 연임 제한) 지나친 연임으로 후계 경영자 양성 장애 등 지배구조의 퇴행이나 독립성 훼손이 명백한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4.6.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불법행위, 정관위반, 직무수행 부적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임기 중 해임에 반대한다.

## V. 임원의 보수 및 성과 보상

### 5.1 이사·감사의 보수

5.1.1 (이사의 보수 한도) 이사의 보수 한도가 회사의 규모, 경영 성과, 총주주 수익률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5.1.2 (이사 보수에 관한 공시 확대) 보상 한도, 내역, 책정기준 지급내역 등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5.1.3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까지 보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5.1.4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이사의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안의 경우 매도제약 기간 등이 적절히 부여되어 중장기적으로 이사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찬성한다.

5.1.5 (감사의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동종산업의 수준, 회사의 규모, 회사 임직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이 과소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5.2 성과 보상

5.2.1 (성과 보상의 지급 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 수준,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5.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 총발행주식 대비 그 규모가 과도한지의 여부
- 부여내용과 연동된 경영성과 지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여부
- 최초 권리행사가능시점을 법정시점 이후로 정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였는지 여부
- 우수인재 유치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2.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 사후적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단, 무상증자, 액면분할, 합병, 자본감소 등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의 경우에는 찬성한다.

5.2.4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추가조작, 부정거래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5.2.5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 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5.2.6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외이사에게 급여의 일부를 퇴직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퇴직 후에 매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주는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5.3 퇴직보상

- 5.3.1 (퇴직보상금)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이 재직 중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한다.
- 5.3.2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사외이사에게 퇴직혜택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5.3.3 (황금낙하산 등 과도한 퇴직금 규정) 경영권 방어장치를 명분으로 한 황금낙하산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5.3.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 VI. 자본

### 6.1 자본 증가

- 6.1.1 (자본 증가)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다음 예시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찬성한다.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등 기타 증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6.1.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를 위해 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당압력의 증가, 주식 가치의 희석 등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6.1.3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일반공모, 신주의 제3자 배정 등 기존주주의 신주우선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의 훼손, 회사의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6.1.4 (채무재조정 목적의 신주 발행) 채무재조정의 목적으로 보통주식 혹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6.2 종류주식

- 6.2.1 (종류주식 발행)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 운영자본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은 찬성한다.
- 6.2.2 (경영권 방어목적의 종류주식 발행)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가 일반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6.3 자기주식

- 6.3.1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재무상황, 주주환원 정책,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한다.
- 6.3.2 (자기주식의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6.4 사채

6.4.1 (주식연계채권 등 특수사채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의 훼손, 회사의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6.4.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의 훼손, 회사의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6.4.3 (주식연계채권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을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6.5 주식분할 · 병합

6.5.1 (비례적 주식분할 · 병합)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행주식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6.5.2 (비례적이지 않은 주식병합) 경영상 책임을 부담하는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병합하고 기존 주주에게 불리함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6.6 자본금 감소

6.6.1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을 감소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 기업 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 상장 유지를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유상 감자나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Ⅷ. 인수합병 및 기업구조 조정

### 7.1 인수합병

7.1.1 (인수합병) 인수합병 안건은 인수가격,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주가 등 시장반응, 불공정거래 개입 가능성, 특정 주주 등의 사적인 이익추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7.2 분할 및 분할합병

7.2.1 (분할 및 분할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지배주주만의 지배권 강화 등 혜택 독점 및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하락 등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정보 공시 및 절차의 적정성
- 잔존 회사, 분할신설 및 분할합병회사의 계속기업성, 성장성, 수익성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7.3 상장폐지

7.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이의신청권, 의견진술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 등 소액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한 경우
-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7.3.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이전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찬성한다.

### 7.4 경영권 방어장치

7.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주주가치에 우선하여 기존의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 초과배당 등 자본재구축 전략
-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의 발행,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 부여 등 사전 약정
-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비자발적 퇴직 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 계약
- 기타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합리성, 정당성이 결여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정관변경안

## VIII. 지속가능경영

### 8.1 ESG 경영

8.1.1 (ESG지속가능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목표, 재무적 성과 목표와의 균형, 기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DR &  
AJU

## 아주기업경영연구소

AJU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Management

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권고안 제공을 목적으로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작성하였습니다. 당 연구소는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의안의 사안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령 등의 개정 시 본 가이드라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 가이드라인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귀속되며,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